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 2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1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8. 1. 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도 봉 주

### 가.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법률 제7943호)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4.28.법률 제794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 「관광진흥법」(2007.4.11.법률 제8343호)등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지방자치법」 등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6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시행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을 조정함 (제3조 관련 별표)

◆ 신 설 (18종)

연번	종 목	단위	수수료	비 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관광진흥법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
4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
5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
6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8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
11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
1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
1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1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17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 변 경 (18종)

연번	종 목	단위	현행수수료	개정수수료	비 고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3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2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	1건	10,000원	15,000원	"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명칭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15,000원	"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30,000원	20,000원	"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명칭변경	"
7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950원	5,000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동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8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1건	950원	3,000원	
9	공유재산의 매수신청	1건	950원	5,000원	
10	공장등록 증명	1동	350원	1,000원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10,000원	20,000원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20,000원	30,000원	
13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원	40,000원	
1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20,000원	
15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50,000원(종합병 원) 30,000원	100,000원	
16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1건	10,000원	40,000원	
17	체육시설업 신고	1건	5,000원	30,000원	
18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0,000원	

◆ 삭 제 (1종)

연번	종 목	단 위	수 수 료	비 고
1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3,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10월2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6년4월28일 제정되어 동년 10월29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2007.4.11 법률 제8343호)등의 유통관련업 법률의 재·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 명칭 및 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변경된 민원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7년10월4일 대통령령 제 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대상사무별로 수수료 징수기준과 원가분석 및 원가산출기초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